

#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개정(안) 심의서

## 1. 규정 개정 취지

- 규정 명칭의 일반적 표현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으로 변경
- 질병 휴학 조건 변경
- 국내·외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인정 학점 조정
- 명예박사학위 절차 명료화
-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외 내용의 “준용” 근거 마련

## 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- 규정 명칭의 일반적 표현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으로 변경
- 질병 휴학 조건 변경
  - 질병 휴학 조건 변경: 4주 이상 진단서 적용
- 국내·외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인정 학점 조정
  - 학기당 타 대학원 학점교류 인정 학점을 3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
- 명예박사학위 절차 명료화
  - 명예박사학위 학위기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44조에 규정화되었으므로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에 중복적 표기를 제외함
-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이외 내용에 대한 “준용” 근거 마련
  -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이외 내용에 대한 준용 근거 마련

## 3. 신구대조표 (예시)

현행	개정(안)
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	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<u>시행세칙</u> <개정 2026. 0. 0.>
<p><b>제28조(휴학과 복학)</b>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기 중 의무복무로 휴학할 경우,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환불하지 아니하며, 차기 복학 학기에 감면한다. &lt;개정 2020. 3. 1.&gt;</p>	<p><b>제28조(휴학과 복학)</b>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<u>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</u>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6. 0. 0.&gt;</p> <p>②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기 중 의무복무로 휴학할 경우,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환불하지 아니하며, 차기 복학 학기에 감면한다. &lt;개정 2020. 3. 1.&gt;</p>

현행	개정(안)
<p><b>제22조(국내·외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</b></p> <p>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,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&lt;개정 2020. 3. 1.&gt;</p> <p>②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b>제52조(명예박사학위)</b>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되 학칙 제38조의 별표2에 따른다.</p> <p>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별지 제3호 서식」의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.</p> <p>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<b>제62조(학칙적용)</b>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22조(국내·외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</b></p> <p>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6학점,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&lt;개정 2020. 3. 1.&gt;, &lt;개정 2026. 0. 0.&gt;</p> <p>②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b>제52조(명예박사학위)</b>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되 학칙 제38조의 별표2에 따른다.</p> <p>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b>총장</b>이 행한다. &lt;개정 2026. 0. 0.&gt;</p> <p>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1장 기 타</p> <p><b>제62조(준용)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사내규를 적용한다.</b> &lt;개정 2026. 0. 0.&gt;</p>